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재편 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사업재편 종합 지원센터 등 사업재편 지원체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32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인정 범위를 품목·행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1) 법 위임사항 구체화

가. 지역균형발전 활동 정의 (안 제3조의6)

신규 고용·투자 촉진 등 사업재편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내 고용·투자 창출 또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지역균형발전 활동을 규정

나. 공급망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 (안 제4조)

공급망 안정품목, 경제안보 품목 등 타 법상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인정된 품목과 생산, 비축, 수입대체 등 유형화된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 적용범위 규정

다. 사업재편계획 소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안 제6조)

소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결과 본심의 보고 절차 규정

라.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안 제8조의2)

사업재편지원협의회 위원정수 등 사업재편지원협의회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고시(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로 재위임

마. 탄소중립 목표 구체화 (안 제9조)

탄소중립 목표를 친환경 공정 도입 수준, 친환경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 및 매출비중 등으로 구체화

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관리 등 (안 제17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신청계획서의 내용, 선정 이전 검토사항 및 검토기간, 선정 이후 지원실적 보고 의무, 선정 취소 사유 등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지원센터 및 전문지원기관 지정·관리 등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사업재편 종합·현장 지원센터와 사업재편 전문지원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 지원실적 관리 및 지정취소 등 지정·관리 기준을 마련

(2) 제도운영 개선

가. 구조변경 요건으로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추가 (안 제2조)

기업이 시설·장비를 매각하지 못하고 감축 또는 폐쇄하는 경우라도 기업활력법상 구조변경 요건으로 인정하여,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재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심의위원회 자격요건 완화 (안 제5조)

민간 산업·금융 전문가 및 청년의 심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금융 전문가 및 청년에 대해서 심의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규정

다. 사업재편 판정위원회 절차특례 신설 (안 제6조의2)

유턴·샌드박스 기업 등 사업재편 판정에 준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 기술 적합성 판단을 받은 경우 판정절차 면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7.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제3조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3조의5를 각각 제3조의5, 제3조의3 및 제3조의4로 한다.

제3조의3(중전의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를 “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한다.

제3조의4(중전의 제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5호다목”으로 한다.

제3조의5(중전의 제3조의3) 중 “법 제2조제8호”를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지역에서의 고용·투자 창출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신제품 개발·생산 등 산업생태계의 혁신
을 가져오는 활동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이전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
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
0조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
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및 동법 제1
2조의2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
정된 경제안보 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핵심자원

② 법 제4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내 생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류 개선 또는 보관·비축시설 확대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처를 변경하거나 다원화하여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제5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계 또는 금융권에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며 동법 제15조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으로 한다.

-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1명이 대

표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회의에 부쳐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2의 제목 “(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사업재편판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신산업”을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을 “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또는 탄소중립으로서 미래 사업재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산업”을 “산업·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5. 신청기업의 기술력, 목표 기술수준 및 사업화 수준 등 미래 사업재편 실현가능성

⑦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재편으로 진출하려는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사업재편으로 진출하려는 분야의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산업용

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기업으로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한 기업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기업, 유관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업의 대표자,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임직원 또는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사기관 지정 등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를 “법 제9조제2항제2호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2호의 경영지표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친환경 공정 도입 수준, 친환경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또는 매출비중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목표를 말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나목 중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재편계획이 미래 사업재

편에 부합하는지”로 한다.

제17조의3,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법 제24조의3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추진하는 기업(이하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추진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지원계획서”이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추진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지원내용 및 기간 등 지원계획
4. 신규 고용, 투자 창출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가능성 등 지원 효과
5. 지원 협약서 등 증빙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반려 시에는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지원 대상 기업이 승인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아닌 경우
3. 지원계획이 부실하거나, 지원효과가 사업재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계기관 사실 확인과 지원 효과 검토 등을 거쳐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 계획기간 내에서 최대 5년으로 한다.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은 선정 유효기간 동안 지원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실적이 매우 부실한 경우

제23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종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
·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 또는 현장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운영·지원 실적 확인 결과 지원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제23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
의3 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사업재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할 경우,
명칭·대표자 및 지원 업무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 결과 지원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합병,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소유, 회사의 설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② (생략)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8. ----- 제7호-----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매출액 영업이익률의 감소, 비용 대비 제품등의 가격변화율 둔화, 생산설비 등의 가동률 저하, 제품 및 원재료 등의 재고율 증가, 그 밖에 업종	제3조(과잉공급의 상태) 법 제2조 제4호가목----- ----- ----- ----- ----- ----- ----- -----

및 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를 말한다. <u>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7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 6. (생략) <u>제3조의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을 말한다. <u>제3조의4(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9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 -----. <u>제3조의2(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가목</u>----- ----- ----- -----. 1. ~ 6. (현행과 같음) <u>제3조의5(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6호</u>----- ----- ----- ----- ----- ----- -----. <u>제3조의3(디지털 전환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u>----- ----- ----- ----- ----- -----
---	--

말한다.

1. · 2. (생략)

제3조의5(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2. (생략)

<신설>

제4조(적용 범위)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의4(탄소중립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다목-----

-----.

1. · 2. (현행과 같음)

제3조의6(지역균형발전 활동)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지역에서의 고용·투자 창출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신제품 개발·생산 등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가져오는 활동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방이전

제4조(적용 범위) ① 법 제4조제1

<신 설>

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및 동법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안정품목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안보 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핵심자원

② 법 제4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① · ② (생략)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6조제5항제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 (생략)

<신설>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내 생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류 개선
또는 보관·비축시설 확대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처를 변
경하거나 다원화하여 특정 국
가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5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

1. 2. (현행과 같음)

3. 산업계 또는 금융권에서 중
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

<신 설>

3. (생 략)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신산업판정위원회의 구

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의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며 동법
제15조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
격을 갖춘 자로서 기업구조조
정 또는 사업재편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1명
이 대표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
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심
의한 내용을 회의에 부쳐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⑥ ----- 제5항-----
-----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

제6조의2(사업재편판정위원회의

성과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판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략)

2. 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④ (생략)

⑤ 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이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1. ~ 4. (생략)

구성과 운영 등) ① -----

----- 사업재편판정위원회-----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산업-----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또는

탄소중립으로서 미래 사업재편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판정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5. 신청기업의 기술력, 목표 기술수준 및 사업화 수준 등 미래 사업재편 실현가능성

⑥ -----

----- 산업·기술 -----

-----.

⑦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위원회의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재편으로 진출하려는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국내복귀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사업재편으로 진출하려는 분야의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서 규제 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한 기업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 제8항-----

-----.

제8조의2(사업재편지원협의회) ①

주무부처의 장은 기업, 유관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업의 대표자,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임직원 또는 사업재편 관련 전문가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사기관 지정 등 사업재편지원협의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재편계획을 추진하여 사업재편 종료 시 달성하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영지표의 수준을 말한다.

1. 2. (생략)

<신설>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생략)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재편을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달성 목표)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 전단--

-----.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2호의 경영지표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친환경 공정 도입 수준, 친환경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또는 매출비중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목표를 말한다.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기업이 추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생략)

2. (생략)

④·⑤ (생략)

<신설>

하는 사업재편계획이 미래
사업재편에 부합하는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기업) ① 법 제24조의3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추진하
는 기업(이하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추진기업”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생
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이하
“지원계획서”이라 한다)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추진
기업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
처

2. 지원 대상 기업의 명칭 및 소
재지

3. 지원내용 및 기간 등 지원계
획

4. 신규 고용, 투자 창출 및 산
업구조 고도화 촉진 가능성
등 지원 효과

5. 지원 협약서 등 증빙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반려 시에는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지원 대상 기업이 승인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아닌 경우

3. 지원계획이 부실하거나, 지원 효과가 사업재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계획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계기관 사실 확인과 지원 효과 검토 등을 거쳐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재편 계획기간 내에서 최대 5년으로 한다.

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은

<신 설>

선정 유효기간 동안 지원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매년 제출하
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
년 이상 지원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실적이 매우 부실
한 경우

제23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
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위탁업
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종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주요 권역별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현장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지원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지원센터 또는 현장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운영·지원 실적 확인 결과 지원실적이 없

<신 설>

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제23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재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한 경우, 명칭·대표자 및 지원업무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실적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
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 결과
지원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
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4231